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공포 알림

1. 관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공포(제1919호, '23.12.7)

< 개정 내용 >

제2조제1항	■ 건강진단 항목 개선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제2조제4항	■ 건강진단 검사 · 유예 기간 신설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 → (개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0일 이내 검사 (신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별지	■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 신설

2. 위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가 신설된 법정 서식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관련 안내자료.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장(식품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광주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증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 인천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건식품안전과장), 관련협회, 대한의사협회

주무관 **이경민** 사무관 **박진국** 식품안전정책과장 **최대원** 전결 2023. 12. 7.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정책과-12038 (2023. 12. 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안전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16 팩스번호 043-719-2000 / kmlee0507@korea.kr / 비공개(5)

힘내라 대한민국!